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환 명령의 재량 인정 및 의무적 감면사유 규정 등〉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4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및 분기별 확인조사 실시	3
2. 반환 명령의 재량 인정 및 의무적 감면사유 규정	8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4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4. 15.
- (3) 회 부 일 : 2026. 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및 분기별 확인조사 실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안 제21조제6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 ⑤ (생략) <u><신설></u> ⑥·⑦ (생략)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제23조(확인조사) ① ----- ----- ----- ----- -----

각 호의 사항을 <u>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u>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u>분기마다</u>----- ----- ----- ----- -----. <u><단서 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2조제2항1)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제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무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 상태 또는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함.

□ 한편, 현행법 제23조3)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 수급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4)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 신청사유서 작성, 가족관계해체 사유서에 대한 보증인 서명 요구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신청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고⁵⁾,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5) 이현정, [단독]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요구, 서울신문, 2019.8.19., https://v.daum.net/v/NNSxdOspA0?f=p&utm_source=chatgpt.com

또한, 현행 확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 이후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여건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급여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만으로는 실제 생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히 시스템상 확인되는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수급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통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는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 외에 수급자에게 수급에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관계 법령에 명시된 서류 외의 자료 요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공적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⁶⁾

따라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서류 요구는 제한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자료 제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생활여건, 가족관계, 부양실태, 주거상황 등 개별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법령에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확인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 확인조사와 연 6회의 월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정기 확인조사는 금융재산을 포함한 수급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별 확인조사는 자동차 취득, 연금 수급 개시 등 금융재산 외 재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월별 확인조사 역시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분기별 조사 이상의 확인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법률상 확인조사의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분기마다’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조사 횟수나 운영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연간 정기·월별 확인조사 추진일정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방식	△	△	△		●		△	△	△		●	

* ● : 정기조사, △ : 월별조사

2. 반환 명령의 재량 인정 및 의무적 감면사유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등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토록 하는 한편(안 제47조제1항),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뿐만 아니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u>압류</u> 할 수 없다.	제35조(압류 등의 금지) ① ----- ----- ----- ----- <u>압류하거나 상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u>명하여야</u> 한다.	제47조(반환명령) ① ----- ----- ----- ----- ----- ----- <u>명할 수 있다.</u> -

다만, <u>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u> <u>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u> <u>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u> <u>3.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7조제1항7)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의 과잉지급분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87,751건의 반환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95.5%인 83,824건이 반환되었음.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406억 4,400만원의 반환명령에 대하여 331억 2,200만원(81.5%)이 반환되었음.

< 2023~2025년 생계·의료·주거급여 반환명령 건수 >

(단위: 건, 천원)

급여명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발생	반환	면제
생계 급여	건수	41,072	39,883	95	42,843	41,495	59	44,173	42,620	16
	금액	25,602,600	22,023,813	113,996	27,583,861	23,401,949	67,944	31,022,623	23,081,897	30,164
의료 급여	건수	106	28	0	36	18	0	39	10	0
	금액	9,936	2,287	0	3,848	2,133	0	1,300	745	0
주거 급여	건수	44,058	41,767	29	45,212	42,621	15	45,714	43,032	7
	금액	12,153,401	10,256,630	11,689	12,790,292	10,694,265	6,567	12,759,521	9,902,291	4,775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은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을 재량사항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반환액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목적과, 수급품 및 이를 받을 권리를 보호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을 면제하고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⁹⁾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요건에 있는 수급자들 사이에 실제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급여 제공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과잉지급분 발생 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 과잉지급의 발생 경위, 반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액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요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획일적인 의무 감면 사유를 규정하기보다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과잉지급의 원인 및 귀책 정도, 반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에 따른 생활 곤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급품의 과잉지급분에 대하여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강제징수로 인하여 오히려 수급자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¹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환수금 또는 반환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¹¹⁾

그런데, 상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반환이 필요한 과잉지급분에 대하여 결국 강제징수 절차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수급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이 직접적으로 징수 대상이 되어 단기간 내 생활수준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급자 보호와 반환금 징수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법적 근거는 개별 사회보장급여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을 뿐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보다는, 상계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추가서류금지)급여 결정·실시를 위해 실제 생활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모든 서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확인조사 강화)현재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연 6회 월별조사를 실시 중으로, 확인조사 전체 체계 및 절차, 담당자 업무 부담 등을 고려 필요, ▲(상계금지)수급자 동의를 전제로 상계절차를 진행중이며, 상계하지 않는 경우 진행되는 강제 징수 절차는 오히려 수급자에게 부담 우려, ▲(반환감면)수급자의 생활 실태·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반환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며, 감면의무 부과시 부정수급 가능성,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처) 복지정의 실현,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규모, 既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추가서류금지)부정수급 의심 등 급여 결정을 위한 공정한 조사 필요성, 실제 생활실태 반영 등을 고려할 필요, ▲(확인조사 강화)수급자 부담, 공무원의 조사 업무 부담 등 우려, ▲(상계금지)보장비용 환수율의 급격한 저하 및 행정비용 증가 예상, ▲(반환감면)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도덕적해이, 국가재정 누수 등이 우려됨.

* 경기, 충북, 경남, 제주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 **배경 및 경과**

- **(배경)** 부적정 수급 차단 및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인 수급 적정성 조사·확인 실시

*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사업법령

- **(경과)** '10.7월 최초 시행 이후, '25년까지 총 28회 정기조사 실시

□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①기초생활보장, ②기초연금, ③장애인연금, ④차상위 장애수당, ⑤차상위 자활, ⑥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차상위계층 확인, ⑩~⑫타법의료 급여(⑩북한이탈주민, ⑪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국가유공자), ⑬초중고 교육비 지원*

*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⑩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 1회(상반기) 실시

- **(주기)** 정기 확인조사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실시, 정기 조사 준비기간(1~3월,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 수행**(연 6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방식	△	△	△		●		△	△	△		●	

* ● : 정기조사, △ : 월별조사

- **(조사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공 금융기관** 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정보 68종**

- **(추진절차)** ①수급가구의 인적정보 정비, ②소득·재산정보 입수 등 사전 준비 과정(3개월)을 거쳐, 지자체에서 수급자격 재정비(3개월)



[참고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정보 (총 68종)
---------------	--------------------------------

기관 (21개)		연계정보 (68종)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5)	<u>산재보험급여</u> ,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국고용정보원(4)	<u>실업급여</u> , 퇴직금, 고용보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지급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u>장애인임금내역</u>
교육부-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3)		<u>사학퇴직연금급여</u> , 재직자기여금, 사학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가보훈부(2)		보훈대상자명예수당, <u>보훈대상자보상급여</u>
국방부	국방부(2)	<u>군인퇴직연금급여</u> , 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재직자기여금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자동차등록원부, <u>차적정보</u> , <u>건설기계보유정보</u>
	국토교통부(9)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u>전월세거래정보</u> , 임대임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보험개발원(3)	<u>차량기준가액</u> , 의무보험가입정보, 차량가액 정보
금융기관(1)		<u>금융재산정보</u>
기획 재정부	국세청(11)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u>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u> , <u>종합소득</u> , 근로장려금, <u>일용근로소득정보</u> ,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농림 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1)	<u>기본형 공익 직불금</u>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대법원-법원행정처(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4)	<u>건강보험보수월액</u> , 건강보험 만성질환의료비, 의료보험 만성질환의료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보
	국민연금공단(4)	<u>국민연금급여</u> , <u>소득신고액</u> ,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u>노후긴급자금</u>
	한국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u>별정우체국연금</u> ,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 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3)	<u>공무원연금</u> ,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u>재산세</u> , <u>취득세</u>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되는 자료(26종)를 의미하며,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공(수동반영)

* 밑줄은 월별확인조사 활용 자료